

서울특별시 도시건축진흥시설 운영 및 관리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의안 번호	430
----------	-----

2019. 3. 6.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수 석 전 문 위 원

1. 제안경위

- 2019. 2. 1. 서울특별시시장 제출(2019. 2. 7. 회부)

2. 제안이유

- 서울특별시에 신설되는 도시건축진흥시설의 효율적인 운영·관리 및 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가. 조례 목적 및 용어를 정의함(안 제1조 및 제2조)
- 나. 도시건축진흥시설의 명칭과 위치를 별표로 규정하도록 함(안 제3조)
- 다. 도시건축진흥시설 이용자의 편의를 위해 편의시설을 설치·운영 할 수 있도록 함(안 제4조)
- 라. 서울도시건축센터의 업무를 규정하고 건축문화강좌를 개설하는 경우 강좌 수강료의 부과기준 및 범위는 시장이 정하도록 함(안 제5조 및 제7조)
- 마. 서울도시건축전시관의 휴관일, 이용료, 무료이용 대상자, 이용 금지 대상 및 행위의 제한 등 박물관 운영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규정함(안 제8조부터 제18조까지)

바. 정책수립 등에 관한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도시건축진흥시설 운영자문위원회를 설치·운영하도록 하고, 위원의 구성, 위원장·부위원장의 선출, 회의, 수당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9조부터 제23조까지)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해당없음

나. 예산조치: 협의완료

다. 기 타

(1) 입법예고(2018. 11. 1. ~ 11. 20.) 결과: 의견없음

(2)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별도 첨부

5. 검토의견

- 이 조례안은 서울도시건축센터('18.1.~) 및 서울도시건축전시관('19.3.28. 개관 예정)의 운영·관리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2019년 2월 1일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하여 같은 해 2월 7일 우리위원회에 회부된 사안임.
- 조례안의 구성은 도시건축진흥시설 정의 및 대상(안 제1조~제4조), 서울도시건축센터(안 제5조~제7조), 서울도시건축전시관(안 제8조~제18조), 운영자문위원회(안 제19조~제24조) 등 총 4장 24개 조문으로 이루어져 있음.

참고로, 동일 조문(제16조)이 중복되어(제18조와 제19조 사이) 제출되었는데, 조례안 제출시 보다 주의가 요구된다 하겠음.

“전시관 중심의 조례안 구성”

- 이 조례안은 서울시 도시건축 관련 정책홍보·교육·자료축적·공공건축지원 등을 위한 시설을 ‘도시건축진흥시설’로 정의하고, 그 종류를 서울도시건축센터(이하, 센터)와 서울도시건축전시관(이하, 전시관)으로 정하고 있으며, 운영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를 구성하여 도시건축진흥시설의 정책·사업·대관 등의 사항을 자문할 수 있도록 함.
- 센터는 ‘18년 1월부터 운영되고 있고, 전시관은 올해 3월 개관될 예정인 가운데, 이 조례안은 양 시설을 운영·관리하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 더 나아가, 향후 유사시설 설치 등 시설 확대성을 감안하여 도시건축진흥시설을 포괄적 개념으로 정의하고 그 운영·관리사항을 마련코자 한 것으로 파악됨.
- 그러나, 조례안의 상당 내용이 전시관의 이용·대관·위탁 등의 사항이고, 센터는 단 3개의 조문으로(기능·자료제출·강좌개설) 센터의 기능 규정 외에는 단편적이고 부수적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운영자문위원회의 위원 구성 및 운영에 있어서도 전시·공연·행사 분야의 민간 위원으로 구성될 가능성이 크고, 따라서, 위원회의 자문도 전시관 운영에 집중될 것으로 예상되는 등

이 조례안은 명목상은 도시건축진흥시설의 운영·관리 사항을 규정한다고 하나, 사실상은 전시관 운영·관리 사항을 규정한다고 볼 수 있음.

“전시관과 센터의 시설 상이성”

- 센터는 건축서비스산업진흥법(이하, 건축서비스법)에 기반한 산업 진흥이

중심인¹⁾ 반면, 전시관은 도시건축 문화 진흥이 중심으로, 서로 연계성은 있으나 센터는 보다 전문성을, 전시관은 보다 대중성을 요하는 시설로서 각 시설 성격이 다르다고 할 수 있음(붙임1).

좀 더 살펴보면, 센터는 건축서비스산업 진흥을 위한 정책·사업이 중심으로 서울시가 직접 운영하는 반면, 전시관은 도시건축 계획·사업 등의 시민 공유가 중심으로서 민간이 운영하며²⁾, '18년 행정사무감사 및 '19년 예산안 예비심사시 우리위원회에서 센터와 전시관의 명확한 차별성을 강조한 바도 있음.

- 따라서, 성격이 서로 다른 시설의 운영·관리사항을 하나의 조례³⁾에 규정하기 보다는, 이 조례안은 전시관 운영·관리 조례로 그 성격과 내용을 보다 명확히 하고, 센터는 그 역할과 기능, 조직, 업무 등을 구체화하여 별도의 조례로 제도화하는 것이 보다 타당할 것으로 판단됨.

특히, 센터의 근거가 되는 건축서비스법⁴⁾은 2013년에 제정되었으나 아직까지 그 조례가 마련되지 않았는데, 서울시의 건축서비스산업 여건과 특성에 부합한 해당 조례가 마련될 필요가 있으며,

센터의 역할·기능·조직·업무 등의 사항도 건축서비스법에 따른 조례

1) 추진근거 (자료: 서울도시건축센터 설립 추진계획, 시장방침 제322호, 2015.11.5.)

- 건축서비스산업진흥법 제24조(공공건축지원센터) : 공공건축의 사전검토와 발주 및 기획·관리에 관한 자문에 응답하기 위해 공공기관을 공공지원센터로 지정할 수 있음

- 건축서비스산업진흥법 제25조(건축진흥원의 설립)

제25조(건축진흥원의 설립 등)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축서비스산업 진흥을 위하여 건축진흥원을 설립하거나 건축서비스산업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을 건축진흥원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건축진흥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정책 및 제도 연구·조사·기획, 2. 실태조사, 3. 정보체계 구축사업, 4. 건축서비스 표준화 연구 및 보급 지원, 5. 창업지원, 6. 출판 및 홍보, 7. 교육·연수, 8. 국제 교류·협력, 9. 그 밖에 건축서비스산업 진흥을 위한 사업

2) (사)한국건축가협회 운영('19년 ~ '20년)

3) '도시건축진흥시설'은 법령 용어가 아닌, 서울시가 자체적으로 시설 유형을 규정한 것임

4) 건축서비스산업 기반 조성(실태조사, 정보체계 구축, 연구·개발 등), 건축서비스산업 활성화(전문인력 양성, 고용촉진, 창업지원 등), 건축서비스산업 진흥(설계공모 활성화, 공공건축 지원 등) 등을 규정

에서 규정하는 것이 법적 체계에서(모법-조례)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됨.

- 참고로, 건축서비스법이 개정되어(개정 '18.12., 시행 '19.12.) 지역 공공 건축지원센터의 설치 근거가 마련된 만큼(제24조의2 신설, 붙임2), 신설 규정을 활용하여 센터의 법적 근거를 확고히 함과 더불어, 센터에 필요한 기능을 법령에 담을 수 있도록 대외적 노력도 요구된다 하겠음.

“전시관과 작품 확보·관리”

- 이 조례안은 전시관의 이용·대관·위원회운영 등을 중심으로 규정되어 있고, 전시 작품에 관한 사항은 규정되어 있지 않는데, 전시 작품의 확보에서 보관 또는 처분까지, 즉, 구입·제작·기증·임대(유상, 무상) 등의 작품 확보 사항과 전시 후 보관 또는 처분 사항, 그리고, 작품 훼손 또는 도난시 조치 사항이 추가될 필요가 있음. 다만, 이러한 전시 작품에 관한 사항들은 실질적인 운영 경험이 필요하므로, 일정기간 운영 경험이 축적되면 이 조례 개정을 통해 해당 사항들이 규정되어야 할 것임.
- 또한, 운영자문위원회를 10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토록 되어 있으나, 위원회의 자문 사항이 주로 대관에 집중될 것으로 예상되므로(붙임3), 위원회 자문 사항 대비 위원회가 과다 구성되지 않도록 위원 수의 적정성이 재검토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지며, 규칙에 조례 시행의 포괄적 위임을 둔 조항(안 제24조)은 삭제하여, 포괄위임의 입법 관행을 탈피하고, 필요시 필요한 사항만 규칙에 위임토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사료됨.

□ 종 합

- 이 조례안은 서울도시건축센터와 서울도시건축전시관의 운영·관리 사항을 도시건축진흥시설로 지칭하여 규정코자 하나, 센터는 건축 서비스산업 진흥을 위한 시설로 보다 전문성을 요하는 시설인 반면, 전시관은 도시건축문화 진흥을 위한 보다 대중적 시설로서 각 시설의 목적과 성격이 다르고, 조례안 구성이 사실상 전시관 운영·관리에 치중되어 있으므로, 이 조례안은 전시관 운영·관리 조례로 그 성격과 내용을 명확히 하고, 센터에 관한 사항은 그 목적과, 역할, 기능, 조직, 업무 등을 구체화하여 별도의 조례로 제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됨.
- 특히, 서울도시건축센터의 근거가 되는 건축서비스법에 따른 서울시 조례가 아직 마련되어 있지 않으므로 서울시의 여건과 특성에 부합한 해당 조례가 제정될 필요가 있고, 이 조례에 센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이 법적 체계에서 보다 타당할 것으로 사료됨.

담당자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입법조사관 최정희
연락처	02-2180-8206
이메일	rienrien@seoul.go.kr

〈붙임1〉 서울도시건축센터와 서울도시건축전시관 비교 (자료: 도시공간개선단)

○ 추진 근거

서울도시건축센터	서울도시건축전시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법령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축기본법 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 전문지식 발전 및 전문인력의 양성 -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 방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울도시건축센터 설립 추진계획(시장방침 제322호, 2015.11.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법령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축기본법 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 교육·홍보 활성화 -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정의), 제5조(문화예술 공간의 설치 권장) ○ 방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종대로 일대 역사문화 특화공간 조성 기본계획(2014.4.10.)

○ 시설

	서울도시건축센터	서울도시건축전시관
위치	종로구 송월길 2 일원	중구 태평로1가 60-6호 외 5필지
대지면적	9,770㎡(돈의문 박물관마을)	1,558.3㎡
연면적	2,114.18㎡	2,998㎡
층수	지하1층, 지상 5층	지하3층, 지상1층
사업기간	'15. 7. ~ '17.8(1단계 공사 완료)	'16. 10 ~ '18.12
사업비	약 53억원	약 340억원
연간운영비	약 614백만원(2019년 예산)	약 2,050백만원(2019년 예산)

○ 운영

	서울도시건축센터	서울도시건축전시관
운영형태	직영	민간위탁 - 위탁기간 : '19년 ~ '20년(2년) - 수탁주체 : (사)한국건축가협회
관리부서	도시공간개선단(도시건축센터팀)	도시공간개선단(도시건축센터팀)
조직 구성 및 인력 규모	○ 도시건축센터팀 업무담당자(5명) - 팀장(1), 학예연구사(1), 시설(1), 공무원(2)	○ 도시건축센터팀 업무담당자(4명) - 팀장(1), 시설(1), 공무원(2) ○ 민간위탁 : 9명(관장 1명 포함)

○ 주요 기능

서울도시건축센터	서울도시건축전시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울시 공공건축 아카이브 작업 ○ 서울시건축 정책에 대한 교류 활성화 ○ 도시건축정책 연구 및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울시 도시건축을 주제로 한 전시 및 공연 ○ 다양한 계층을 대상으로 한 강연 및 토론 ○ 시민들을 위한 휴식과 소통의 공간 제공

○ 주요 업무

서울도시건축센터	서울도시건축전시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공 건축물 정보체계 구축 ○ 공공건축 및 정책 관련 자료 수집·보존 ○ 도시·건축정책 교육 프로그램 운영 ○ 건축정책 관련 안내 프로그램 운영 ○ 도시건축 제도 개선 방향 연구 ○ 혁신 신기술 및 재료 공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시 공간(갤러리 등) 기획 및 운영 ○ 강연 및 포럼 등 행사 기획 및 시설 대관 ○ 서울시 건축물 및 건축가 관련 자료 아카이브 및 전시 ○ 건축 관련 해외 우수 시설과의 교류·협력 ○ 카페 등 편의 시설 유지 관리

○ 주요 프로그램

서울도시건축센터	서울도시건축전시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민과 함께 만들어가는 도시정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공건축 통합자료 시스템 운영 - 제도개선 세미나 - 세계도시와 정책 교류 등 ○ 건축 산업 및 문화 혁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재료·기술 공유회 - 건축서비스산업 기초조사 - 신진건축가 육성 프로그램 등 ○ 도시건축 정책 관련 문화·교육 활성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돈의문 박물관마을 건축 투어 - 어린이 대상 건축학교 - 공공건축·도시재생 정책 답사 프로그램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시 프로그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울의 도시 계획 및 건축변화상에 대한 전시 - 서울 도시개발 역사에 대한 전시 - 미래 서울에 대한 도시건축 전시 - 도시재생 및 주택 정책에 대한 전시 - 서울도시건축파빌리온 기획 전시 - 서울도시건축비엔날레 연계 전시 등 ○ 강연 및 포럼 프로그램 기획 및 대관 ○ 아카이브 운영 프로그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울도시건축센터와 차별화하여, 서울시 주요 건축물 및 건축가 자료 수집 및 전시 ○ 해외 우수 시설과의 국제 교류 ○ 교육 및 시민참여 프로그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옥상시민행사 - 서울 도시건축 브랜드 공모전 - 시티투어 프로그램 등

〈붙임2〉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개정 (제24조의2 신설)

제24조의2(지역 공공건축지원센터의 설치 등) ①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역 공공건축 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설치된 지역 공공건축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해당 지방자치단체 또는 관할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 발주하는 공공건축 사업에 대한 제23조제2항에 따른 공공건축 사업계획서에 대한 사전검토 업무

※ 제23조제2항

② 공공기관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건축 사업을 하고자 할 때에는 제22조의2제2항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이를 제24조에 따른 공공건축지원센터 또는 제24조의2에 따른 지역 공공건축지원센터(이하 "공공건축지원센터등"이라 한다)에 제공하여 검토를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제22조의2제5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자가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건축기획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사업계획서에 대한 검토를 수행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8. 12. 18.>

2. 해당 지방자치단체 또는 관할 시·군·구에서 발주하는 공공건축 사업에 대한 제24조제2항 각 호의 업무

※ 제24조제2항

② 공공건축지원센터가 수행하는 자문에 대한 응답 등의 업무의 범위는 각 호와 같다.

1. 공공건축의 발주에 관한 자문에 대한 응답
2. 공공건축의 기획 및 관리에 관한 자문에 대한 응답
3. 공공건축의 디자인관리에 관한 자문에 대한 응답
4. 공공건축의 에너지 효율화 등 지속가능성 제고방안에 관한 자문에 대한 응답
5. 공공건축의 유지·관리 방안에 관한 자문에 대한 응답
6. 공공기관 관계자에 대한 교육
7. 공공건축에 대한 데이터베이스 구축
8.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공공건축에 대한 자문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나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요청하는 사항

③ 지역 공공건축지원센터가 제2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 지역 공공건축지원센터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운영실태를 평가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역 공공건축지원센터의 설치, 운영 및 승인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붙임3〉 유사 운영자문위원회 '18년 회의 개최현황 (자료: 도시공간개선단)

○ 시민청

연번	일시	회의 안건
1	2018. 2. 28.(수)	- 2017년 운영결과 및 2018년도 운영계획 보고 - 시민청 대관 심의 자문 등
2	2018. 6. 27.(수)	- 대관규정 개정안 검토 자문 - 공간별 대관료 산정 및 개정 검토 자문 등
3	2018. 8. 29.(수)	- 운영자문위원회 시의원 위원 위촉 - 시민청 시민디렉터 추가 선발 검토 및 승인안 자문 등
4	2018. 10. 31.(수)	- 운영자문위원회 위원 신규 위촉 보고 - 시민청 예술가 및 시민기획단 활성화 방안 자문 등
5	2018. 12. 3.(월)	- 2019년 상반기 시민청 공간지원사업 선정결과 보고 - 2019년 시민청 운영자문위원회의 운영방안 논의

○ 서울역사박물관

연번	일시	회의 안건
1	2018. 3. 2.(금)	- 자문위원 위촉 및 상견례, 위원장·부위원장 선출 - 2017년 주요 업무 보고
2	2018. 5. 23.(수)	- 제1차 유물공개구입 구입대상유물 최종심의
3	2018. 9. 14.(금)	- 제2차 유물공개구입 대상유물 최종심의 - 제1차 유상기증 대상유물 최종심의
4	2018. 12. 12.(수)	- 2018년 주요 업무 추진실적 보고 및 발전방안 자문

○ 서울시립미술관

연번	일시	회의 안건
1	2018. 2. 12.(월)	- 2018년도 기획전시 관람료 심의 - 2018년도 주요 사업계획 자문 등
2	2018. 7. 6.(금)	- 2018년도 제1차 소장작품 수집(최종결정) 심의 - 2018년도 작품수집 자문 등
3	2018. 11. 20.(화)	- 2018년도 제2차 소장작품 수집(최종결정) 심의